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23,245,095	21,697,353
일반회계		652,818,068	19,584,542
특별회계		70,427,027	2,112,811
	공기업특별회계	37,817,017	1,134,51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7,817,017	1,134,511
	기타특별회계	32,610,010	978,3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48,401	22,452
	자활기금특별회계	2,348,290	70,449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784,056	53,52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81,062	8,432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18,505	6,555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1,617,362	48,521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18,358	6,551
	수질개선특별회계	25,393,976	761,81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000,000천원으로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788,66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9,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